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34회 제2차 정례회(2019. 12. 9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
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복지도시위원회

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19-170
----------	--------

2019. 12. 9.
전문위원 신준호

1. 제안경위

- 가. 제 안 자 : 장덕준 의원 외 5인
- 나. 제 안 일 : 2019. 11. 21.
- 다. 회 부 일 : 2019. 11. 25.

2. 제안이유

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에 따라 조례에도 그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 적용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상위법률의 제명 변경으로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을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(안 제6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1)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
 - 2) 「감정 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- 다. 기타

1) 입법예고 : 2019. 11. 21.~ 11. 25.(의견 없음)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 배경

본 조례와 관련 있는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이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되면서 보상금액 결정기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.

나. 주요 조문 검토

-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이 부동산 가격 평가 산정 기준임에도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여 이를 별도 분리 제정됨으로서 본 조례에도 이를 반영하여 근거 법률 제명을 변경함.(안 제6조)

다. 종합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 법령인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상 부동산 가격공시가 일반 국민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로 인식되고 있음에 따라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이 반영된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이 신규로 제정(2016. 1. 19.)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 법률의 제정 시기(2016. 1. 19.)를 고려했을 때 시의성은 다소 떨어지나 지금이라도 이를 적시하여 법률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됨.

[관 계 법 령]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공익사업)

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.

1. 국방·군사에 관한 사업
2.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·인가·승인·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·도로·공항·항만·주차장·공영차고지·화물터미널·궤도(軌道)·하천·제방·댐·운하·수도·하수도·하수종말처리·폐수처리·사방(砂防)·방풍(防風)·방화(防火)·방조(防潮)·방수(防水)·저수지·용수로·배수로·석유비축·송유·폐기물처리·전기·전기통신·방송·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
3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·공장·연구소·시험소·보건시설·문화시설·공원·수목원·광장·운동장·시장·묘지·화장장·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
4.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·인가·승인·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·도서관·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
5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
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, 교량, 전선로, 재료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
7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,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
8.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